

의안 번호	418
----------	-----

제 목 :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
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제 출 일 : 2008년 11월 18일

제 출 자 : 대 전 광 역 시 장

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1. 제안이유

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변동액을 조정하고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변경 및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을 증감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안	기정예산	제 2회 추경		비 고
			예 산 액	증감을 (%)	
합 계	2,704,383	2,609,282	95,101	3.6	
일 반 회 계	1,934,472	1,868,887	65,585	3.5	
특 별 회 계	769,911	740,395	29,516	4.0	

나. 일반회계예산

(1)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 안	% 구성비	기정예산액	% 구성비	2회추경	% 비율	비 고
계	1,934,472	100	1,868,887	100	65,585	3.5	
지 방 세	958,487	49.5	921,889	49.3	36,598	4.0	
세 외 수 입	201,911	10.4	199,209	10.6	2,702	1.3	
지 방 교 부 세	301,711	15.6	291,030	15.6	10,681	3.7	
국 고 보 조 금	402,863	20.8	381,259	20.4	21,604	5.6	
지 방 채 및 수 예 치 금 회	69,500	3.7	75,500	40.4	△6,000	△7.9	

(2)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기 능 별	예 산 안	% 구성비	기정예산액	% 구성비	2회추경	% 비율	비 고
계	1,934,472	100	1,868,887	100	65,585	3.5	
인 건 비	148,997	7.7	147,258	7.9	1,739	1.2	
물 건 비	55,592	2.9	55,617	3.0	△25	△0.1	
경 상 이 전	902,391	46.7	876,491	46.9	25,900	3.0	
자 본 지 출	471,685	24.4	457,836	24.5	13,849	3.0	
융 자 및 출 자	22,600	1.2	22,600	1.2	-	-	
보 전 재 원	33,476	1.7	33,476	1.8	-	-	
내 부 거 래	276,663	14.3	257,564	13.8	19,099	7.4	
예 비 비 및 기타	23,068	1.1	18,045	0.9	5,023	27.8	

다. 특별회계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산안	기정예산액	2회추경	% 증감율	비 고
계	769,911	740,395	29,516	4.0	
< 공 기 업 >	290,632	295,388	△4,756	△1.6	
상 수 도	105,000	107,000	△2,000	△1.9	
하 수 도 사 업	73,664	76,501	△2,837	△3.7	
지 역 개 발 기 금	111,968	111,887	81	0.1	
< 기 타 >	479,279	445,007	34,272	7.7	
주 택 사 업	5,108	5,053	55	1.1	
교 통 사 업	30,267	29,723	544	1.8	
광 역 교 통 시 설	9,344	8,387	957	11.4	
의 료 급 여 기 금	146,482	131,059	15,423	11.8	
도 시 개 발	146,465	145,757	708	0.5	
산 업 단 지	9,092	3,664	5,428	148.1	
도 시 철 도 사 업	106,355	108,168	△1,813	△1.7	
학 교 용 지 부 담 금	23,704	11,171	12,533	112.1	
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획시설대지보상	402	402	-	-	
기 반 시 설	2,060	1,623	437	26.9	

3. 본 문

별첨 「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」 내용과 같음.

긴급의안 제출 사유서

□ 의 안 명

2008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
추가경정 예산안

□ 긴급 제출사유

-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일 14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나
- 2008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회일 14일전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
 - 제2회 추경은 '08년도를 정리하는 최종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최종확보와 인건비 등 법적지원경비 마무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11월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.
 - 금번 추경예산안도 중앙지원예산 변동 등으로 부득이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. 11.

대전광역시

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